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안)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근기

-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변경 알림」
(기업금융과-257, '16.03.24.)

2. 주요 개정내용 : 특례보증 시행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16.03.31.(한도소진시 까지)	<u>2016.12.31.(한도소진시 까지)</u>

3. 시행일 : 2016년 4월 1일(금) (신청서 접수일 기준)

- 붙 임 : 1.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
3.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
4.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 방법 1부. 끝.

대리

팀장

부장

이사장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204 (2016.04.01.) 접수 ()

우 121-802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08 서울신용보증재단 16층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15 /전송 02-3278-8117 / bbangjaya@seoulshinbo.co.kr / 공개